

2026년 북구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지원기업 2차 모집 공고

- R&BD 기업지원, 미래자동차 부품전환, 스타비즈니스센터 성장지원 -

울산광역시 북구와 (재)울산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2026년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울산 북구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, 울산테크노파크원장

1. 지원개요

- (사업명)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
- (지원규모)
 - 지원금 : 최대 15백만원(프로그램별로 상이함) ※ 부가세 제외
 - 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10% 이상
- (지원기간) 2026. 5. ~ 2026. 10. (6개월)

2. 지원대상(신청기업)

- (신청자격 및 요건)

지원분야	신청자격 및 요건
공 통	○ 사업 공고일 현재, 울산 북구 내에 사업장(본사, 공장 또는 연구소)이 1개소 이상 소재하며 제조업 및 전·후방 연관 제품(기술) 및 서비스 보유 중소기업
미래자동차 부품전환 종합지원	○ 자동차 전·후방 관련 산업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및 관련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* 준비단계기업 :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미래차 부품개발 위한 아이템 모색 중인 기업 * 실행단계기업 : 부품개발, 선행기술 분석, 자원조달 등 미래차 부품을 개발 중이거나, 기술 대안을 찾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
스타비즈니스센터 성장지원	○ 스타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(공고 기간 내 선정 완료)

○ (신청 제외 대상)

※ 사전 지원 제외 대상	
○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,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	
○ 국가지원사업의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	
○ 정부, 지자체, 기업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	
○ 기업의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	
○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	
○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	
○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	
○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이상	
○ 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 (7년 이하 창업기업은 해당없음)	
○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미반영" 또는 "부적정" 또는 "의견거절"의 경우	
○ 부실징후가 있거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경우	

3. 세부 지원내용

○ (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) 총 3개 지원분야 4개 프로그램 5개사

※ 기업당 최대 1,500만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	프로그램	지원항목	지원규모
기술주도형 R&BD 기업지원	제품 고급화	○ 기존 제품의 개선 제품 및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사양 변경품 제작 지원 등 * 양산비용(양산금형 제작, 양산재료 구입) 지원 불가	○ 기업당 최대 1,300만원 (1개사)
미래자동차 부품전환 종합지원	준비단계기업 종합 지원	○ 기업기술 진단, 미래차 부품 시장조사, 선행기술·특허 조사, 사업화전략·비즈니스모델 개발, 기업 ESG체계 구축 지원 등	○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(2개사)
	실행단계기업 종합 지원	○ 제조공정 디지털화 및 시험라인 운영지원, 부품 전환 생산설비 교체 지원(설계/제작) 등	○ 기업당 최대 1,500만원 (1개사 내외)
스타트업·스퀘어 성장지원	입주기업지원	○ 판로개척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○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○ 사업 및 제품 홍보수단 제작 지원 ○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○ 기타 (타당성 검토 후 가능 여부 판단)	○ 기업당 최대 500만원 (1개사)

※ (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 방법)

-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
-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 이상 산정(현금 부담, 현물 불가능)
-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기업에서 별도 부담
- 사업비는 견적서를 근거로 구성하며,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견적서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

- 기업에서 총사업비를 선집행 후,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후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(사후 정산)

4. 평가방법 및 기준

- (평가방법)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해당여부 사전검토(필요시 현장확인) → 발표평가
- (평가항목) 발표평가

구 분	평가위원구성	평가항목 및 배점
발표평가	○ 관련분야 전문가 5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타당성 (2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(10점) - 달성 목표의 현실성 및 타당성 (10점) ○ 기술성 및 경쟁력 (2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제품(기술)의 독창성 또는 차별성 (10점) - 기존 시장 제품(기술) 대비 시장 경쟁력 (10점) ○ 추진계획 및 실행역량 (2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진일정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(10점) -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(10점) ○ 사업화 및 성장 가능성 (3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깃 시장 설정의 구체성 및 시장 접근 전략의 적정성 (10점) - 지원제품(기술)의 사업화 가능성 (10점) -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(10점) ○ 사업비 구성 (1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명확성 (10점)

- (선정기준)

구 분	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	선정기준
발표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위원별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함 ○ 최고 또는 최저 점수 중 동일한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, 그중 하나를 제외 하고 계산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 종합평점이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(예산 한도 내)

※ 평가위원회는 신청과제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음

5.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 및 접수기간) 2026. 4. 21.(화) ~ 5. 8.(금) 18:00 까지
- (신청방법)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*을 통한 신청접수

* <https://platform.utp.or.kr/> (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상단 '기업 매뉴얼' 참조)

접수절차	내용
① 회원가입	○ 회원가입 여부 확인,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회원가입 진행 ※ 신규 회원가입 시, 관리자 승인 대기 시간 발생함(승인 1일 소요)
② 접수	○ 로그인 → 공고목록 확인 → 해당 공고조회 →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→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작성
③ 파일업로드	○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 작성 및 첨부 서류 구비 후, 기업지원사업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
④ 최종제출	○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

7. 제출서류

<제출서류 목록>

연번	제출서류	필수여부	부수	비고
1	신청서 및 과제 계획서	필수	1부	서식1
2	제출서류 목록표	필수	1부	서식2
3	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	필수	1부	서식3
4	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필수	1부	서식4

5	사업자등록증(본사) ※ 단,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울산 북구가 아닌 경우 울산 북구 내 사업장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필수 (사업자등록증(지사) 또는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)	필수	1부	-
6	2023년 ~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※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,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※ 재무제표를 미제출할 경우 [서식 2. 제출서류 목록표] 상에 그 사유를 기재	필수	연도별 각1부	-
7	2023년 ~ 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※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(검색기준 설정 : 매년/12/31 ~ 매년/12/31 (*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))	필수	연도별 각1부	-
8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본	필수	각1부	-
9	거래처(공급기업)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	필수	각1부	-

※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8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되거나,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받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며,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
-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,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
- 허위, 중복지원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- 과제 수행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나 공장 등이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

9.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

-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, 울산 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,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

10. 이의신청

- 이의신청의 범위
 - (이의신청 가능 사항)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, 과제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, 지원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
 - ※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
 - (이의신청 불가 사항) 선정결과 통보, 평가위원 선정, 사업비 결정, 평가규정 및 절차, 평가방식(사전검토/발표평가) 등에 대한 이의
- 이의신청 방법(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)
 - (신청기한)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* 이내
 - ※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
 - (제출서류) [서식 5. 이의신청서]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본 공고문의 12. 문의처로 이메일 발송
 - (작성방법) 신청기업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, 통보일, 평가결과,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
 - (유의사항)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전검토, 발표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

11. 관련법규 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- (지원근거)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
- (관련규정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,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,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

12. 문의처

담당자	소속	연락처	이메일
이상윤 수석연구원	기업지원단	052-219-8725	sangyun@utp.or.kr

- 끝 -